##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00

발의연월일: 2024. 9. 23.

발 의 자: 손명수 · 김남근 · 김선민

김태년 · 김한규 · 남인순

박 정・송기헌・이훈기

정준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과거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 1. 7. 시행)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불합리를 해

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 및 제3호).

법률 제 호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를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형의"를 "금고 이상의 형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 제9조(결격사유)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       |                   |
| 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     | 2                 |
| 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                   |
|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u>끝</u> |                   |
| 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
| <u>로 확정된 후</u> 3년이 지나지 |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
| 아니한 사람                 | 이 면제된 날부터         |
|                        |                   |
|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 3                 |
| <u>형의</u>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 <u> 금고 이상의 형의</u> |
|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